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8
------------	-------

제출년월일 : 2010.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우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 함(안 제3조제2항)
- 다.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 함.(안 별표1의제2호)
- 라. 법제처에서 정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안 제3조1항)(안 제3조2항)(안 제3조3항)(안 제3조4항)(안 제3조5항)(안 제3조의2제2항)(안 제4조제1항)(안 제4조제1호)(안 제4조제2호)(안 제4조제3호)(안 제4조제2항)

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안 제1조)(안 제3조제1항)
-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변경(안 제3조의2제1항)

3. 개정근거

- 1)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 2)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006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0. 09. 09. ~ 09. 29.(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10. 09. 30)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를 “「도로 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를 “직접손케부분 또는 간접손케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접된”을 “가까운”으로 “추후에”를 “나중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로, “원인자부담금”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복구에 소요되는”를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으로 하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를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로,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으로, “복구공사시”를 “복구공사 시”로 하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각호의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납부기간내에”를 “납부기간 내에”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0조에 따라”로,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기한내에”를 “납부기한 내에”로,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를 “「지방세법」 제28조를”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환부”를 “환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초의”를 “처음의”로,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초의”를 “처음의”로, “환부”를 “환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당초에”를 “처음에”로, “당초의”를 “처음의”로, “추징”을 “추가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u>원인자부담금</u>(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 략) 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u>직접손케부분</u> 및 <u>간접손케부분</u>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생 략) 3. “<u>간접손케부분</u>”이라 함은 <u>직접손케부분</u>에 <u>인접된</u> 부분으로서 <u>초후에</u>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u>도로법</u>」 제76조에 따른 <u>원인자부담금</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직접손케부분</u> 또는 <u>간접손케부분</u>.... 2 (현행과 같음) 3.<u>가까운</u>.....<u>나중에</u>.....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u>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u></p> <p>②<u>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케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u></p> <p>③<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 합에 있어서의 도로복구 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에 의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u></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u>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u></p> <p>②<u>원인자부담금은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다른공사 또는 다른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③<u>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별표 1 별표 2 별표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구공사 시</u></p>

현 행	개 정 앤
<p>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1~3 (생 략)</p> <p>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u>당해</u>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u>다음</u>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p>	<p>④.....<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1~3 (현행과 같음)</p> <p>⑤.....<u>단서에 따라</u>.....<u>해당</u>.....<u>다음 달</u>.....</p>
<p>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그 <u>납부기간내에</u>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그 <u>납부기한내에</u>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u>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u>납부기간 내에</u>.....<u>법 제90조에 따라</u>.....<u>(삭 제)</u>.....</p> <p>②.....<u>납부기한 내에</u>.....<u>「지방세법」 제28조를</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원인자부담금의 <u>환부</u> 및 <u>추징</u>)</p> <p>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u>환부</u>할 수 있다.</p> <p>1. <u>당초의</u>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u>도로복구공사</u>를 <u>요하지</u> 아니하게 된 경우</p> <p>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케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u>당초의</u>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u>환부</u>대상에서 제외</p> <p>3. <u>기타</u>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p> <p>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u>당초에</u>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u>당초의</u>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u>추징</u>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케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u>징수</u> 할 수 있다.</p>	<p>제4조(원인자부담금의 <u>환급</u> 및 <u>추가징수</u>)</p> <p>① <u>각호의 어느 하나에</u><u>환급</u>.....</p> <p>1. <u>처음의</u> <u>도로복구공사</u> <u>가 필요하지</u></p> <p>2. <u>처음의</u></p> <p>.....<u>환급</u>.....</p> <p>3. <u>그 밖에</u></p> <p>②<u>처음에</u>.....<u>처음의</u></p> <p>.....<u>추가징수</u>.....</p> <p>③.....<u>징수할</u>....</p>

현 행

<별 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준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계영 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칫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칫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m²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개 정 안

<별 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준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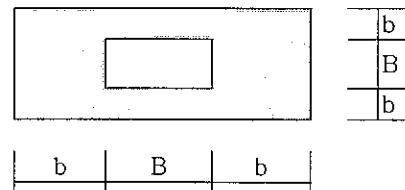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계영 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칫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칫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m²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단,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m²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4cm) 비용
감독 업무비	도로굴착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비고 : ① 보도외 굴착은 굴착잔여 층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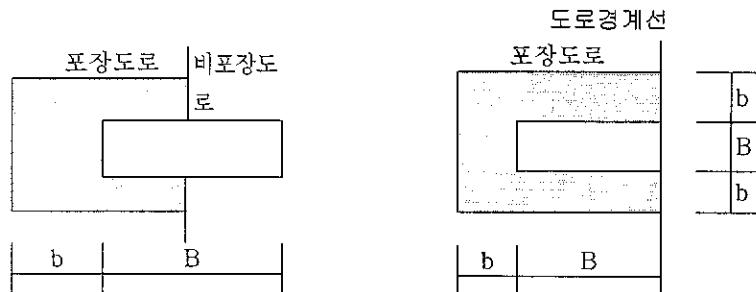
3. 굴착폭(B), 간접손케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케영향(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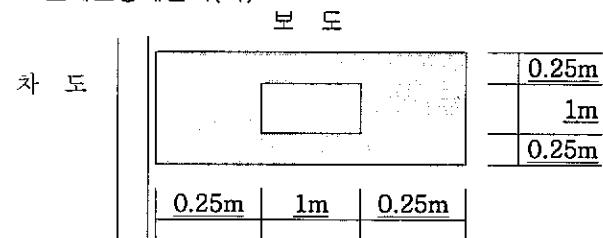
(1) 표준 평면도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비고 :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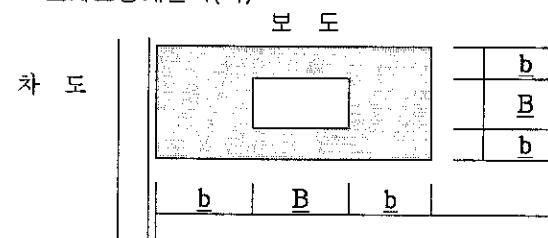
3. 굴착폭(B), 간접손케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케영향(b)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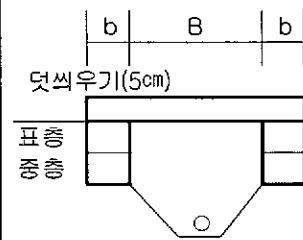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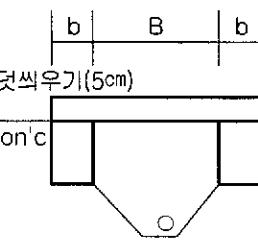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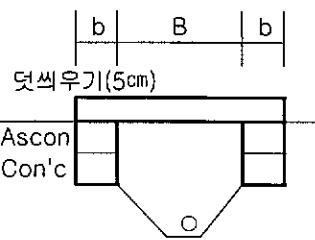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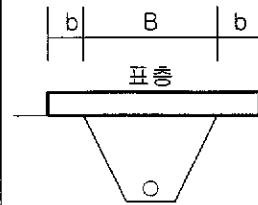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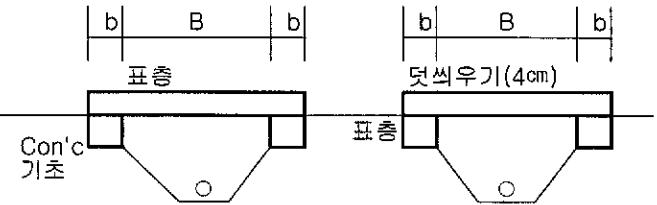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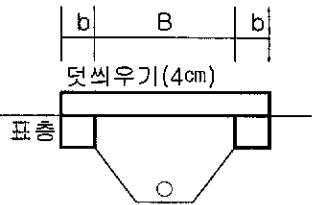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타일류



③ 토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4.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록(석), 축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 한다

나. 간접복구단면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 10. 25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10. 10. 07
- 다. 위원회회부 : 2010. 10. 08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도로상의 원활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1)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
 - 2)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변경 (안 제3조의2)
- 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 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추가 (안 제3조제2항)
- 다.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 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 (안 별표1의제2호)
- 라. 기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기금운용계획 따로붙임
- 다. 기타
 -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0.09.09 ~ 09.29)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 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도로상의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제출된 것으로
- 조례 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당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추가하고 안 별표1의 제2호에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는 등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타 2010년 및 2011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 기금 운용계획은 따로붙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2010, 201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계획

■ 총괄

(단위:천원)

년도	수입액	지출액	잔액	누계
2010년도	1,797,100	1,591,460	205,640	505,061 ※ (299,421)
2011년도	1,231,400	1,218,320	13,080	518,141

※ 2009년 → 2010년 이월액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합계	1,797,100	1,231,400
원인자부담금	1,781,000	1,216,000
이자수입	16,100	15,400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합계	1,591,460	1,218,320
고유목적사업비(시설비)	1,589,000	1,216,000
일반운영비	2,460	2,320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99.11.01 조례 제 0447호

(일부개정) 2003.09.25 조례 제 548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의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에 의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3.9.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03.9.25)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03.9.25)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계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계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로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최초로 인정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에의한 이조례 적용 당시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9.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0.10.16] [서울특별시조례 제5006호, 201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01.07, 2010.04.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케부분 또는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01.07)
2. "직접손케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01.07)
3. "간접손케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01.07)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01.0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2010.04.22, 2010.7.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01.07, 2010.04.22)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본항개정 2003.06.16, 2010.01.07, 2010.04.2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6)(개정 2010.01.07)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4.05.25, 2010.01.07, 2010.04.22)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16)(개정 2010.01.07)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3.10, 2010.01.07, 2010.04.22)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1998.03.10, 2010.01.07)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계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1998.03.10, 2010.01.07, 2010.04.22)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01.07, 2010.04.22)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3.10, 2010.01.07, 2010.04.2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03.10, 2010.01.07, 2010.04.22)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16, 2010.01.07, 2010.04.2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06호, 2010.7.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당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